

『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 규정(안 제3조)
- 제설·제빙작업 시기의 구체화(안 제4조)
- 제설·제빙작업의 방법 구체화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(안 제5조)
- 제설·제빙작업의 필요한 도구 및 안전장비 구체화(안 제6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건축과, 및 도로과와
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,
-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